

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0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5. .
제출자 : 충주시장

1. 제안이유

권투 꿈나무 육성과 '일등 스포츠시티 충주건설'을 목적으로 하는 권투선수단 창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에 '권투 선수단'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설치 종목에 '권투 선수단' 추가(안 제2조제1항)
 - 개정 전 : 배드민턴, 조정, 육상 선수단
 - 개정 후 : 배드민턴, 조정, 육상, 권투 선수단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미첨부사유서) 불임
- 다. 합의 : 완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(1) 입법예고(2013. 3. 21. ~ 4. 11.)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.
 - (2) 규제심사 : 완료
 - (3) 부패영향평가 : 완료
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충주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, “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설치와 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육상”을 “육상, 권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정하는 경우 선수단을 신설 또는”을 “인정하면 선수단을 신설하거나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되고”를 “되고,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연장할 경우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거”를 “연장하려면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거 비치하여야”를 “따라 갖춰 놓아야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5인”을 “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계약금 및”을 “계약금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결정 및”을 “결정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

제6조제2항 중 “단장의 유고 시”를 “단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반”을 “모든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선수에 대한 지도·감독을 하여야”를 “선수를 지도·감독하여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되고자 하는 자는”을 “되려는 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제5호에 따른”으로, “자라야”를 “사람이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라야”를 “사람이어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되고자 하는 자는”을 “되려는 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단원의 재입단 계약의 경우”를 “재입단을 계약하는 단원은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)”을 “(재직증명과 경력증명의 발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청구한 때에는”을 각각 “청구하면”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계약금”이라 함은”을 ““계약금”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연봉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연봉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등급 조정”이라 함은”을 ““등급 조정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계약금 및 연봉)”을 “(계약금과 연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계약금 및”을 “계약금과”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계약 및”을 “계약과”로, “범위 안에서 조정하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”을 “범위에서 조정하지 못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”로, “범위 안”을 각각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34조의 규정을”을 “제34조를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5조제2호 중 “하여서는 아니”를 “해서는 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수행함에 있어서”를 “수행함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 사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단서 중 “단장 및”을 “단장과”로, “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”을 “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작성 비치하여야”를 “작성하여 갖춰 등아야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공가 및”을 “공가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신청 시”를 “신청할 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건 및”을 “조건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, “이상인 경우”를 “이상이면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공가 및”을 “공가와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선고·징계 또는”을 “선고·징계나”로, “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”을 “사유를 따르지 않고는”으로,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한다.

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에 의하여

이를”을 “해당하면 시장은 직권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인해 단원으로서”를 “단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된”을 “따라 폐직·감원이 되었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소멸된”을 “소멸한”으로, “아니할”을 “않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향후”를 “앞으로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”를 “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간 중”을 “기간에”로, “소멸된 때에는”을 “소멸하였으면”으로, “지체 없이”를 “바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휴직기간 중 봉급 월액”을 “휴직기간에 월급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본다.

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

제21조제1항제2호 중 “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”를 “미계약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단원에 대한 이적동의를 합의한 경우”를 “이적 동의 합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제19조에 따라 직권면직 처리

제21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, 개인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”을 “개인 사정으로 더는”으로, “인정 될 경우”를 “인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8호 서식의 의거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”을 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직원을 접수하면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단원에 대하여”를 “단원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”을 “입상하였을 때에 예산의 범위”로 한다.

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”를 “해당할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

제1호 중 “위반한”을 “위반하였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불참한”을 “불참하였을”로 한다.

제25조의 제목 “(징계의 종류 및 효력)”을 “(징계의 종류와 효력)”으로 한다.
제26조제1항 중 “인정될 경우에는 단원의 운영 및 관리를 체육 단체 또는”을 “인정하면 단원의 운영과 관리를 체육단체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”을 “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면”으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될 경우에는”을 “해당하면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한 경우”를 “함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함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함

제27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법령 및”을 “법령과”로, “하며 기타”를 “하며, 그 밖에”로,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28조 중 “실시할”을 “할”로 한다.

별표 3 하단 참고 내용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제5조 중 “「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」”를 “「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」”라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의 제5조 중 “「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」”를 “「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」”라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내용 중 “「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」 및”을 “「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」 와”라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의 내용 중 근무시간과 년월일 사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
「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」 제22조에 따라 상기 단원이 충주시청에서 _____(으)로 이적함을 동의합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</u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 진흥법」 제10조에 <u>의거</u>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(이하 “직장 운동경기부”라 한다)의 <u>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설치 종목) ① 직장운동 경기부에는 배드민턴, 조정, 육상 선수단을 둔다.</p> <p>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<u>인정하는</u> 경우 선수단을 신설 또는 폐지 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(선수단 구성) ① (생 략)</p> <p>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, 감독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,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제4조(단원 임용) ① (생 략)</p> <p>②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<u>의거</u> 입단계약서를 작성한다.</p>	<u>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</u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<u>설치와</u> <u>운영에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설치 종목) ① ----- ----- <u>육상, 권투</u> -----. ② ----- <u>인정하면</u> <u>선수단을 신설하거나</u>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선수단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되고,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단원 임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단원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되,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<u>의거</u> 재입단 계약서를 작성한다.</p> <p>④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하고 인사기록 카드를 별지 제3호서식에 <u>의거</u> 비치하여야 한다.</p>	<p>③ ----- ----- <u>연장하려면</u> <u>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</u>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<u>따라</u> <u>갖춰 놓아야</u> -----.</p>
<p>제5조(운영위원회) ① (생 략)</p> <p>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며, <u>5인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단원의 <u>계약금 및 연봉</u> 심의 2. 단원의 직권면직 <u>결정</u> 및 징계 의결 3. (생 략) 4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<p>⑤ · ⑥ (생 략)</p>	<p>제5조(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5명</u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<u>계약금과</u> ----- 2. ----- <u>결정과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<p>⑤ ·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임무) ① (생 략)</p> <p>② 부단장은 <u>단장의 유고 시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감독은 선수단 운영상의 <u>제반</u></p>	<p>제6조(임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단장이 특별한 사정</u> <u>이나 사고가 있을 때</u> -----.</p> <p>③ ----- <u>모든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행정 사항과 선수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④ 지도자는 선수의 발굴 육성, 훈련, 대회 출전, 체력 관리, 합숙소 운영 등 <u>선수에 대한 지도 · 감독을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선수를 지도 · 감독 하여야 -----.</u></p>
<p>제7조(단원의 자격)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</p> <p>② 지도자는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<u>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</u> 지도경력이 2년 이상인 자라야 한다.</p> <p>③ 선수는 학교 ·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.</p>	<p>제7조(단원의 자격) ① ----- <u>되려는 사람은 -----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제2조제5호에 따른 -----</u> <u>사람이어야 -----.</u></p> <p>③ ----- ----- <u>사람이어야 -----.</u></p>
<p>제8조(임용 서류) ① 신규 입단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② <u>단원의 재입단 계약의 경우</u> 재입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임용 서류) ① ----- ----- <u>되려는 사람은 -----</u>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재입단을 계약하는 단원은 -----.</u></p>
<p>제9조(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)</p> <p>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</p>	<p>제9조(재직증명과 경력증명의 발급)</p> <p>① ----- ----- <u>청구하면 -----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	----- -----.
② 시장은 퇴직한 단원이 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<u>청구한 때에는</u>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<u>청구하면</u> ----- -----.
제11조(정의) 단원에게는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연봉을 지급하며,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11조(정의)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 -----.
1. “ <u>계약금</u> ”이라 함은 계약 시 단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	1. “ <u>계약금</u> ”이란 ----- -----.
2. “ <u>연봉</u> ”이라 함은 계약기간의 연간 보수를 말한다.	2. “ <u>연봉</u> ”이란 ----- -----.
3. “ <u>등급 조정</u> ”이라 함은 단원의 경기 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봉을 상향, 동결, 하향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.	3. “ <u>등급 조정</u> ”이란 ----- ----- -----.
제12조(계약금 및 연봉) ① 단원의 계약금 및 연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계약금은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지급하고 연봉의 심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.	제12조(계약금과 연봉) ① ----- <u>계약금과</u>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.
② 단원의 신규 계약 및 재입단 계약 시 연봉을 별표 3의 <u>범위</u> 안에서 조정하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후	② ----- <u>계약과</u> ----- ----- <u>범위</u> 에서 조정하지 못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-----

현 행	개 정 안
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	-- 범위----- ---.
제13조(단원의 연봉 지급) ① 단원에게 계약에 <u>의거</u> 연봉을 지급한다. ② (생 략) ③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, 그 지급기준은 「근로기준법」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13조(단원의 연봉 지급) ① --- ----- <u>따라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제34조를</u> -----.
제14조(선수단 운영비) ① (생 략) ② <u>기타</u>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	제14조(선수단 운영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.
제15조(단원의 의무)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1. (생 략) 2. 품위 유지의 의무 :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<u>하여</u> <u>서는 아니</u> 된다. 3. 복종의 의무 : 단원은 직무를 <u>수행함에 있어서</u>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. 4. (생 략) 5. <u>기타</u> : 직장 이탈 금지, 비밀	제15조(단원의 의무)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해서는 안</u> ----. 3. ----- ----- <u>수행함에</u> ----- -----.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그 밖의 사항</u> -----

현 행	개 정 안
엄수, 청렴,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	----- -----.
제16조(근무시간 등)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 시간에 준한다. 다만, <u>단장</u> 및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, 전지훈련,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<u>휴일</u> 및 <u>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.</u>	제16조(근무시간 등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 <u>단장과</u> ----- ----- ----- <u>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과</u> -----.
② 지도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 일지를 <u>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</u>	② ----- ----- <u>작성하여 갖춰 놓아야</u> -----.
제17조(휴가)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, 병가, <u>공가</u>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	제17조(휴가) ① ----- ----- <u>공가</u> , -----.
② 시장은 단원이 연가, 병가, 공가, 특별휴가를 <u>신청 시</u> 허가 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<u>신청할 때</u> -----.
③ 휴가 <u>조건</u> 및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	③ --- <u>조건과</u> ----- -----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병가는 90일의 <u>범위</u> 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7일 <u>이상인 경우</u>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다.	2. ----- <u>범위</u> ----- <u>이상이면</u> -----.
3. <u>공가 및 특별휴가는 「충주</u>	3. <u>공가와</u> -----

현 행	개 정 안
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를 준용한다.	----- -----.
제18조(신분보장의 원칙) 단원은 형의 <u>선고</u> · <u>징계</u>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<u>사유</u>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· 면직을 당하지 <u>아니한다</u> .	제18조(신분보장의 원칙) ----- --- <u>선고</u> · <u>징계나</u> ----- ----- <u>사유를 따르지 않고는</u> ----- ----- <u>않는다</u> .
제19조(직권면직)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할 때</u> 에는 시장은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. 1.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인해 <u>단원으로서의</u>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. 선수단의 정원 개 · 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<u>의하여 폐직</u> 및 <u>감원이 된</u> 때 3.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<u>소멸된</u>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<u>아니할</u> 때 4.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<u>향후</u>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	제19조(직권면직) ----- ----- <u>해당하면</u> <u>시장은 직권으로</u> ----- -----. 1. ----- ---- <u>단원</u> ----- ----- 2. ----- ----- <u>따라 폐직</u> · <u>감원이 되었을</u> -- 3. ----- ---- <u>소멸한</u> ----- ----- <u>않을</u> -- 4. ----- ---- <u>앞으로</u> ----- -----
제20조(휴직) ①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<u>요하는 질병</u> 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.	제20조(휴직) ① ----- ----- <u>필요로 하는</u> <u>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면</u> ----- -----.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. 단,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 기간으로 간주한다.</p>	<p>②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. ----- -----.</p>
<p>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<u>소멸된 때에는</u>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<u>지체 없이</u>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	<p>③ ----- <u>기간에</u> ----- <u>소멸하였으면</u> ----- ----- ----- <u>바로</u> ----- -----.</p>
<p>④ 단원의 <u>휴직기간 중 봉급월액은</u> 70퍼센트를 지급한다.</p>	<p>④ ----- <u>휴직기간에</u> 월급-----.</p>
<p>제21조(당연 퇴직) ① <u>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으로 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<u>의거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</u> 2. 계약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재입단 <u>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</u> 3. 충주시와 타 경기단체 간 <u>단원에 대한 이적동의를 합의한 경우</u> 4. 제19조에 <u>의거 단원이 직권 면직 처리 되었을 경우</u> 5. <u>기타, 개인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단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</u> 	<p>제21조(당연 퇴직) 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<u>결격사유 발생</u> 2. ----- <u>미계약</u> 3. ----- <u>이적 동의 합의</u> 4. 제19조에 따라 <u>직권면직 처리</u> 5. <u>개인 사정으로 더는 인정</u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시장은 단원이 <u>별지 제8호 서식의 의거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22조(이적 동의) ① 시와 타 경기 단체 간 <u>단원에 대하여</u>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<u>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</u>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<u>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직원을 접수하면 -----.</u></p> <p>제22조(이적 동의) ① ----- <u>단원의 -----</u></p> <p>② ----- <u>따라 -----.</u></p>
<p>제23조(입상 보상금) ① 시장은 단원이 국제대회, 전국대회 등의 대회에서 <u>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입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23조(입상 보상금) ① ----- <u>입상하였을 때에 예산의 범위 -----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4조(징계)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,</u>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5조 단원의 의무를 <u>위반한</u> 때 2. 월 3일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<u>불참한</u> 때 	<p>제24조(징계) ----- <u>해당할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-----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<u>위반하였을 --</u> 2. ----- <u>불참하였을 --</u>
<p>제25조(징계의 종류 및 효력) ① ~ ⑦ (생 략)</p>	<p>제25조(징계의 종류와 효력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(위탁 관리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<u>인정될</u> 경우에는 단원의 운영 및 관리를 체육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</p> <p>③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될</u>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<u>한</u> 경우 2. 경기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<u>인정한</u> 경우 	<p>제26조(위탁 관리) ① ----- ----- 인정하면 단원의 운영과 관리를 체육단체나 -----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면 ----- ----- ----- ----- 범위----- -----</p> <p>③ ----- ----- 해당하면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할 2.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함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<u>인정함</u>
<p>제27조(수탁자의 의무) 제26조에 의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</p>	<p>제27조(수탁자의 의무) ----- 따른 ----- ---- 법령과 ----- ---- 하며, 그 밖에 ----- ---- 않은 -----.</p>
<p>제28조(지도 · 감독) 시장은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 · 감독을 <u>실시할</u>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</p>	<p>제28조(지도 · 감독) ----- ----- 할 -----.</p>

비 용 추 계 서

1. 의안명과 관련 조문

- 의안명 :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관련 조문

제12조(계약금 및 연봉) ① 단원의 계약금 및 연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계약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연봉의 심의범위는 별표 2와 같다.

제14조(선수단운영비) ① 선수단의 전지훈련비, 대회출전비, 체력건강 보조식품비, 급식비는 별표 3과 같다.
 ② 기타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

2. 비용추계 내용

가. 비용발생의 요인

- 직장운동경기부 권투선수단 인건비와 운영비

나. 추계의 전제

- 인 건 비 : 390,000천원
- 운 영 비 : 54,119천원

다. 추계의 결과

- 총 소요액 : 1,971,319천원(시비)

라. 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:천원)

구분	계	우수 선수 영입	숙소 관리	차량 운영	선수 관리	훈련 및 운영비	일반 보상	그 밖의 비용	비고
2013	444,119	200,000	18,660	28,500	126,667	33,400	31,892	5,000	계약
2014	306,800		6,700	5,000	190,000	44,600	60,500		
2015	406,800	100,000	6,700	5,000	190,000	44,600	60,500		재계약

※ 초기(2013년도) 추가 비용 : 243,000천원

· 선수영입 200,000, 숙소수리 13,000, 차량구입 25,000 그 밖의 비용 5,000

마. 추계의 상세내역 : 불임

3. 비용추계재원 : 전액시비(자체재원)

4. 작성자 :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장 신동식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3년)	2차년도 (2014년)	3차년도 (2015년)	4차년도 (2016년)	5차년도 (2017년)	계
세 입(계)						
지방세						
세 출(계)	444,119	306,800	406,800	406,800	406,800	1,971,319
인건비 등	444,119	306,800	406,800	406,800	406,800	1,971,319
재원 조달	444,119	306,800	406,800	406,800	406,800	1,971,319
의존 재원	소 계	-	-	-	-	-
	보조금	-	-	-	-	-
	지방교부세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444,119	306,800	406,800	406,800	1,971,319
	자체재원 (지방세)	444,119	306,800	406,800	406,800	1,971,319
지방채	-	-	-	-	-	-
기금	-	-	-	-	-	-
공기업 특별회계	-	-	-	-	-	-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-	-	-	-	-	-

【별표 2】

연봉의 심의범위(제12조 관련)

(단위:천원)

직 책	등 급	연 봉		비 고
		하 한 액	상 한 액	
지도자	A급	43,000	48,000	
	B급	38,000	43,000	
	C급	33,000	38,000	
선 수	A급	38,000	43,000	
	B급	33,000	38,000	
	C급	28,000	33,000	
	D급	23,000	28,000	

【별표 3】

선수단운영비(제14조 관련)

(단위:원)

구 분	전지훈련비 (1인)	대회출전비 (1인)	체력건강 보조식품비	급식비	비 고
지급액	60,000/일	60,000/일	100,000 (년4회)	100,000 (매월)	

※ 상기 지급액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.

※ 단, 국제대회의 대회출전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관계법령

□ 국민체육진흥법

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이 지도·감독한다.

□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2조(설치 종목) ① 직장운동경기부에는 배드민턴, 조정, 육상 선수단을 둔다.
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단을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.